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외부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이하 '성과급'이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성과급 지원 대상은 해당기간 내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로 등록되어 산학협력단이 간접비를 징수하는 모든 외부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,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.(개정 2014.1.1., 2022.1.1.)

제3조(지원내용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(이하 “연구개발과제”라 한다)인 경우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총액의 10% 이내로 지원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 금액을 산출하여 차등 지원한다.(개정 2014.1.1., 2022.1.1.)

②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기타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기타과제 간접비 징수액의 30% 이내에서 성과급으로 지원한다.(개정 2014.1.1., 2022.1.1.)

③ 연구비 중 대응자금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성과급 지원비율은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④ 계상된 간접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징수액에 차감 계산하여 지원한다.

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이 산업체를 통하여 재투자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분류한다.

제4조(지원시기) 성과급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지급한다.(개정 2014.1.1.)

제5조(평가방법)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소정 양식의 연구근접지원인력 평가표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2.1.1.)

② 산학협력단장은 당해연도 연구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성과급 지원금액을 연구책임자의 배분을 신청에 따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개인계좌로 지급한다.(개정 2022. 1.1.)

③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인력의 성과급은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 성과급 산출금액의 10%를 적용하며 「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」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.(신설 2022.1.1.)

④ 연구성과 평가는 당해연도 교원 정기업적평가의 연구영역 평가결과를 적용한다.(개정 2022. 1.1.)

⑤ 간접비 실적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된 과제별 간접비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인정한다.(개정 2022.1.1.)

제6조(제한조건)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, 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

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(개정 2022.1.1.)

1. 지급일 기준 본 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
3.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
4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본교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
5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명시된 별도의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
6. 지원기관에서 정한 간접비율이 없는 연구과제 수행시 본교 간접비 계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에 대하여는 2022학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한다.

< 별표 : 연구개발과제 과제별 성과급 산출방법 >(개정 2022.1.1.)

1. 과제별 성과급 지급액(A) = 간접비기본급(B) + 성과평가급(C) + 연구지원인력 성과급(D)
2. 간접비기본급(B) = 과제별 간접비 실적 × 60%
3. 성과평가급(C) = 성과급 예산 × 연구책임자 개인별 연구성과 취득점수합/연구책임자 전체교원의 연구성과 취득점수합 × 30%
4. 연구지원인력 성과급(D) = 과제별 간접비 실적 × 10%

※ 성과급 예산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 중 제한조건 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 예산총액을 말함.

※ 산학협력중점교수, 비전임교원 등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자가 아닌 교원은 성과평가급 30%를 적용함.

※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과 연구근접지원인력에 한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별 간접비 실적의 10% 이내에서 지급함.